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중소기업청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의 존속기한이 경과
- 이에, 상위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을 다시 제정

2. 법적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3. 주요내용

- ①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중소기업청 훈령 제247호)을 그대로 인용(안 제1조~제4조, 제6조~제15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조정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제1항과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조합 최저 발기인 수 및 업무구역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맞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기한을 창립총회 후 “3주일 이내”에서 “4주일 이내”로 변경(안 제5조 제1항제5호)

③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 훈령을 제정한 날로부터 3년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16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팩스 : 042-472-7932

라. 문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042-481-4394)

마. 제출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안)

제정 2013. . . 중소기업청훈령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단체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
2. 사업협동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인 중소기업관련단체(휴면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협동조합 설립

제4조(사전지도) ①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동일업계의 결집된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 및 공동사업 자원조달 가능성, 공동사업의 구체성,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여부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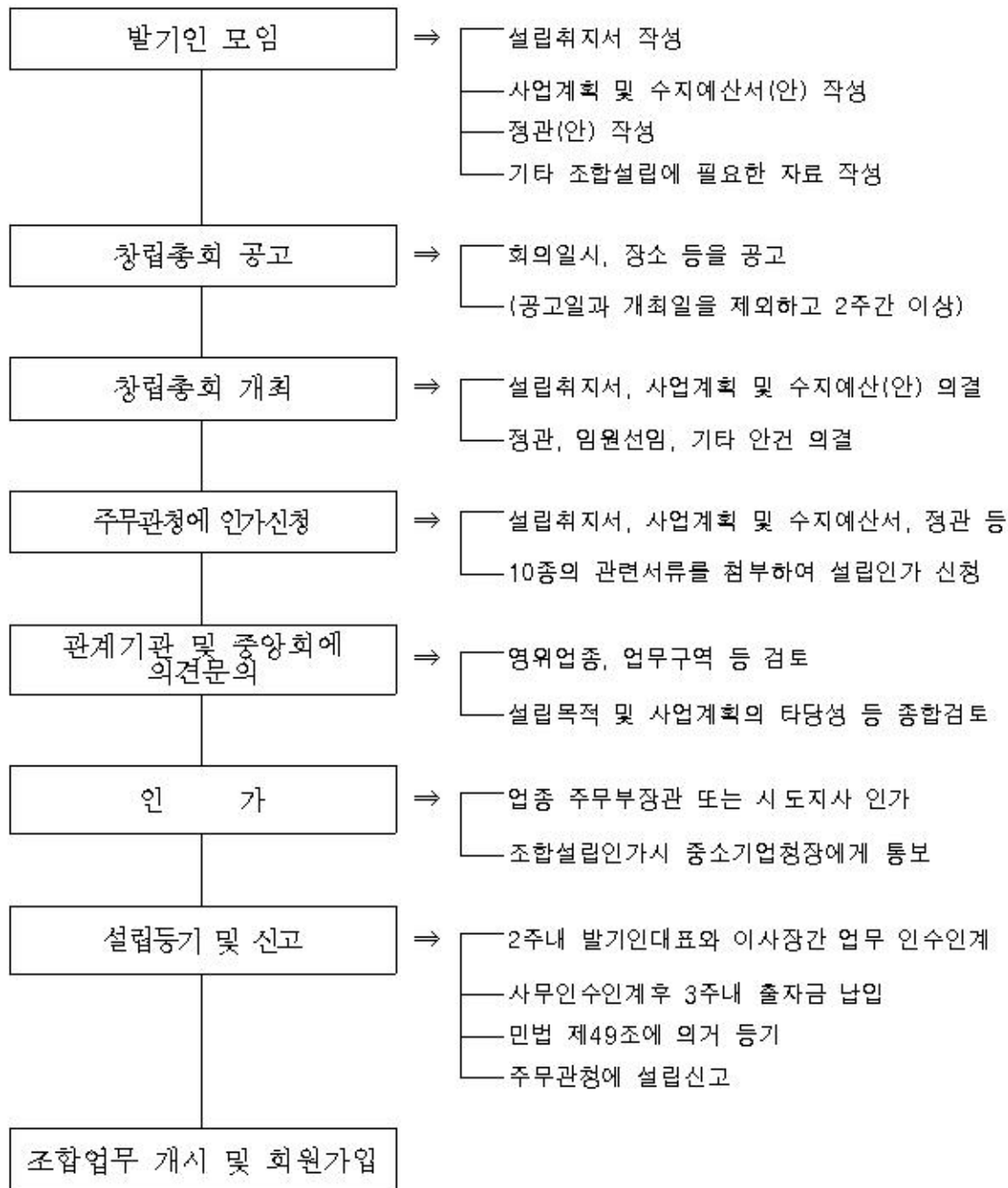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기인 및 가입신청자의 영위 업종을 확인한다.
3. 조합원의 1좌 이상 출자여부를 확인하고, 1좌의 금액이 균일한지 여부 및 1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출자 총좌수의 최대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4. 조합 종류 등에 따라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종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기인수	법정최저출자금
협동조합	전국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80백만원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30인 이상(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40백만원
사업협동조합	전국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 다른 업종)	5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70인 이상)	40백만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일정지역 (단, 다른 업종)	30인 이상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50인 이상)	
	하나 또는 2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인 이상	
연합회	전국(업종연합회)	3개 이상 동일업종 지방조합 (다만, 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 10개 이상)	40백만원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연합회)	5개 이상 지방조합	

5. 창립총회 공고는 창립총회 개최일 2주전에 행하여야 하고, 설립인가 신청은 창립총회 종료후 4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7. 신청 조합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신용조회 및 신용조회(전국은행연합회)를 실시한다.

8. 설립목적, 사업계획, 동종 업계 실태,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중앙회회장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절차)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절차 확인은 다음에 따라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주무관청은 조합의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조합을 대상으로 6월이내에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조합운영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제8조(행정명령)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휴면조합·단체 지정

제9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9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의 미 제출시
2. 법 제130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 이행시
3.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시
4. 회장·이사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5.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단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현장실태 조사) ①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휴면결정)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1년이상 시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휴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 제1항(사업조합은 제82조 제1항 내지 제2항, 연합회는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2.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3. 기타 조합운영 및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 ② 주무관청은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를 한 경우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이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시 2회 이상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단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2조(휴면 지정 절차) 주무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조합·단체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사장 또는 대표에게 주된 사무소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 조합에 대한 통지 및 관보게재에는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단체에 대한 통지 및 관보게재에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단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 호, 2013. 7. 00.>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중전 훈령의 폐지) 중전의 훈령(중소기업청 훈령 제247호)은 폐지한다.

